

#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622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4. 03. .  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의회에서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19조의2)

## 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66조의2

## 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## 5. 기타 참고자료 : 없음

충주시의회 규칙 제 호

## **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입법예고) ①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, 그 입법 취지나 주요내용, 전문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관련조례를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⑤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·결정하고,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# **부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9조의2(입법예고) ①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, 그 입법 취지나 주요내용, 전문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관련조례를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⑤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·결정하고,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

⑥ 그 밖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  
요한 사항은 「충주시 자치법규 입  
법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**관계법령 발췌**

### **[지방자치법]**

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, 주요 내용,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  
② 조례안예고의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